



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



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2차 홍보 계획

2025. 2. ~ 3.

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
서부농업기술센터

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2차 홍보 계획

1 홍보 및 신청(접수) 개요

-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: 2025. 2. 25. ~ 3. 7. 18:00
- 신청대상: 사업 희망 농업인(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)
- 신청(접수)방법
 -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(법인)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
 - 원본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 * 접수마감일 소인 포함
 - 수신처: 제주시 한림읍 월림7길 90, 서부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담당자 앞
 -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,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 * 미 제출 시 현지심사 제외
 - 수신처: hyojin6781@korea.kr, 메일 발신 후 수신 확인(☎760-7913)
- 지원대상 및 지원 형태: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
- 제출서류: (별표)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 활용

< 신청서류 >

○ 기본서류

-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농지대장(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), 지방세 납세증명서,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

○ 추가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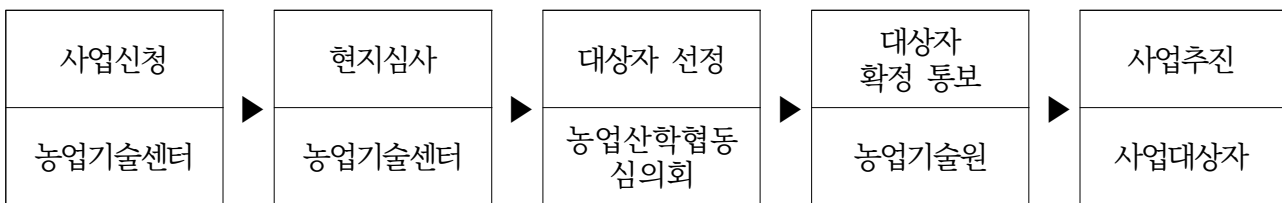
-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(신기술보급사업 해당)
- 소득금액증명원,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(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)
- 졸업증명서(농과계학교 졸업시),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
-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
-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(최근 3년간), 농업인상 수상 사본
(농업기술원, 농업마이스터대학, 감귤대학 등)

※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같음. 여기서,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

2 추진일정

- 2차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: 2025. 2. 25. ~ 3. 7.
-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: 2025. 3. 10. ~ 3. 12.
-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: 2025. 3. 14일 한
- 사업 추진: 2025. 3. ~ 11월
- 사업 평가: 2025. 6. ~ 12월(중간 및 결과 평가 각 1회)

3 대상자 선정 절차



4 대상자 선정 기준

-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
-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, 영농법인, 생산자단체,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
 -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
-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,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
 -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
 - * 단,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
-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
-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, 선정기준 이행
-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
-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수료중(신기술보급사업)의 경우 현지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 가능

< 사업대상 제외자 >

-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(단,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랜딩 모델사업은 제외)
-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(단,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랜딩 모델사업은 제외)
-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(시범사업자 통지)이후 포기하거나,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(배우자 포함)
-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(시범사업 신청자 기준)
 - 농협 상근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,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
 -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
-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
 - ※ 단,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
-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
- 감귤분야사업: 신규 조성 감귤원 (다만,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)

<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, 부득이 사업대상 건물(또는 토지)를 임차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 관리 기간까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대장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 (사업수행 시 사후관리기간까지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야 함)
- 단체(법인)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(저장고, 가공실 등)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(법인) 명의로 등기(10년 이상 임대차계약 포함)되어 있어야 함.
-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게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(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)의 지원요건을 적용함.
-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
 - 가족(세대원)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2중 신청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
- 부모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자녀가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시범 사업을 신청할 경우 부모, 형제자매 등이 확인한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

5 관련 서류

< 별표 1 >

시범사업 신청서

사업명				신청 면적	㎡	
신청 자	생산자 단체명	(단체인 경우 기재)				
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		자택번호		
				휴대폰		
	배우자	생년월일		자택번호		
				휴대폰		
	도로명주소	(기존주소 :)				
영농경력	년	최종학력		단체활동		
작목			재배면적			
신청 내용	사업예정지 지번	읍·면·동		리 번지	사업예정지 면적	㎡
	사업비 (천원)	계		보조	자담	
<p>본인은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·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 □</p> <p>붙임 사업계획서 1부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. 2025년 월 일 신청자 : (인)</p> <p>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</p>						
<p>※ 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- 추가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(건물 등 시설관련사업) 졸업증명서(농과계 학교졸업시),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, 영농승계확인서(필요시), 교육이수확인서(농업기술원(센터), 농업마이스터대학, 감귤대학, 농협), 농업연상 수상 사본(농촌진흥청, 농업기술원) 						

< 별표 3 >

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

동의자 인적사항

사업자(단체)		사업자번호 (생년월일)	
대표자(성명)		전화번호	
신청사업명			

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
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

2025. . .

동 의 자 :

(날인,서명)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

작성 시 주의사항

* 본인 소유 분은 100%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,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%만 영농기반으로 인정

(단,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%는 영농승계(상속, 증여)가 이뤄져야 함)

* (예시)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.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,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.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어야함(나머지, 0.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)

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2차 접수현황: 1사업 4개소 44.8백만원

구분	사업명	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		
			합계	보조	자부담
합계	1사업	4	44.8	40	4.8
신기술보급	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범	4	44.8	40	4.8

주요사업 내용

사업명	사업내용(지원내역)
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범	○ 스마트팜시스템, 센서 및 영상장비 등 지원 ※ 최근5년간ICT 적용 산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한 과수농가대상

1

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

(문 의 : 서부농업기술센터 임황, 760-7943)

목 적

- 과수분야 신기술보급사업 정밀농업 구현 및 스마트팜 기반 조성
- ICT 활용도 제고 및 설치 후 장비 유지보수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5년 3 ~ 12월
- 사업량: 4개소
- 총사업비: 44,800천원(보조 40,000, 자부담 4,800)
 - 개소당 사업비: 11,200천원(보조 10,000, 자부담 1,200)
 - 부담비율: 보조 90%, 자부담 10%
- 사업내용: 스마트팜시스템, 센서 및 영상장비,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설 등

사업대상

-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
- 최근 5년간 아래의 ICT 적용 신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한 과수 농가
- 대상사업
 -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
 -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
 -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
 - 과수 주산지 이상기상 대응 농작업 정보제공시스템 보급 시범
 -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수 소득과수 도입 시범
 -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조성 시범

시범요인

- ICT 활용 신기술보급사업 대상자 스마트팜 기반조성
- 스마트팜 자동제어, 기상장비 유지·보수 및 업그레이드

기대효과

- 자동제어를 통한 노동력 절감, 기상장비를 개선하여 이상기상 피해 감소

시범사업 현지심사표

□ 사업신청자

성명	주소	소재지	신청면적	작목
			m ²	

□ 공통항목 : 40점

조사항목	조사내용	배점	점수	확인내용
보조사업 수혜여부	○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- 미 수혜(20), 5백만원 미만(15), 10백만원 미만(10), 15백만원 미만(7), 20백만원 미만(5)	20		시범사업 선정대상 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
사업예정지 위치	○ 접근성 및 파급효과 - 왕복차선 대도로변(4) - 농로변(2) - 기타(1)	4		
영농경력	○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- 경영체 등록 5년이상(3) - 경영체 등록 3~4년(2) - 경영체 등록 1~2년(1)	3		
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	○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(5) - 본인 또는 배우자(5), 임차등기(3), 직계존속(1) ○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(3) - 본인 또는 배우자(3), 임차등기(1)	5		
농업전문 기술습득	○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- 100시간 이상 5점 (시간 × 0.05점 부여) ※ 사이버교육의 경우 50% 인정하되,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%인정 ※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(농업마이스터, 치유농업), 농업교육포털,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	5		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
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	○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- 중앙(3), 도·시(2), 읍면(1) ※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○ 품목별연구회 임원(1) ○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(1)	3		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
소계		40		

